

대전외국인학교 학칙

2013. 08. 09 제정

2015. 08. 01 1차 개정

2016. 08. 01 2차 개정

2021. 05. 28 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대전외국인학교(이하"본교"라 함)는 초등 및 중등교육법 60조의 2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교육경험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국제적인 사고와 감각을 지닌 균형잡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전외국인학교(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 2로 77 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초등학교 7년(Elementary School, K1 ~ Grade 5)
- ② 중·고등학교 7년(Secondary School, Grade 6 ~ Grade 12)

제5조(학기) 학기는 년 두 학기로 운영한다. 1학기는 8월 부터, 2학기는 다음 해 1월에 시작한다. 학기는 학교장이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한국의 명절 휴일(추석, 설)
- ② 추수감사절
- ③ 봄방학

- ④ 겨울방학
- ⑤ 여름방학
- ⑥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 ⑦ 휴업 기간은 수업 일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⑧ 이 외 비상 재해나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와의 협의로 임시 휴업일을 운영할 수 있다.
- ⑨ 학교장은 필요 시 휴업일이라도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학년.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년. 학급편제) 초등과정(Kinder-1 부터 Grade 5)은 학급 편제로, 중·고등과정(Grade 6부터 Grade 12)은 교과교실 수업제로 운영한다. 학년 및 교육과정별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과정

학년	정원수	학급수
Kindergarten -1	24	1
Kindergarten -2	26	1
Grade 1	50	2
Grade 2	50	2
Grade 3	50	2
Grade 4	50	2
Grade 5	50	2
계	300	12

② 중·고등학교 과정

학년	정원수	교과교실수업제
Grade 6	130	

Grade 7	130	
Grade 8	140	
Grade 9	200	
Grade 10	200	
Grade 11	200	
Grade 12	200	
계	1200	

제8조(학생 정원 및 내국인 입학 비율)

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년별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학년	외국인 정원	내국인 정원	총 정원
Kindergarten -1	17	7	24
Kindergarten -2	18	8	26
Grade 1	35	15	50
Grade 2	35	15	50
Grade 3	35	15	50
Grade 4	35	15	50
Grade 5	35	15	50
Grade 6	91	39	130
Grade 7	91	39	130
Grade 8	98	42	140
Grade 9	140	60	200
Grade 10	140	60	200
Grade 11	140	60	200
Grade 12	140	60	200
계	1050	450	1500

주 : 내국인 정원은, 학년별 총정원의 30%로 (소수점은 반올림 적용) 2009-2010 학년도 부터 Kindergarten-1 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받고 있음.

주 : 1,500명 정원의 구성은 외국인 정원 1,050명과 내국인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② 학년별 학생 정원(내국인의 경우 학년 별 30% 이내)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주무관청의 인가 취득 후에 시행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본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국제학위프로그램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로 운영한다.

- ① IB 세부교육과정은 아래의 학위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PYP(Primary Year Program)-초등교육 프로그램, 만3세부터 만11세
 - MYP(Middle Year Program)-중등교육 프로그램, 만11세부터 만16세
 - DP(Diploma Program)-디플로마 프로그램, 만16세부터 만19세
- ② PYP 과정은 언어, 사회, 수학, 예술, 과학, 체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MYP 과정은 언어와 문학, 개인과 사회, 수학, 디자인, 예술, 과학, 체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DP 과정은 언어와 문학, 개인과 사회, 수학, 예술,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0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전·편입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1조(입학) 본교 입학은 다음의 입학자격과 본교 학사관리 규정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① 외국인(한 부모 이상)의 자녀
- ②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 ③ 귀화자의 자녀

제12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학원서
- ② 입학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③ 전 재적학교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 ④ 건강기록부
- ⑤ 기타 학교에서 정한 서류

제13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성적표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편입학 허용시기) 전·편입학은 학기 내에 가능하나 학년은 본교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제15조(휴학) 학생의 휴학은 총교장이 적절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한다.

제16조(퇴학) 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총교장이 퇴학 처분할 수 있다.

-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④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 ⑤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의 의도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자

제17조(수료 및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과 과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② 본교에서 최종 학년인 Grade 12과정에 재학중인 자
- ③ 출석 사항과 학교 규율을 만족시키는 자

제 6 장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비용 징수

제18조(수업료, 입학금)

① 수업료, 입학금 징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을 매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8조1항의 수업료 및 비용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및 전형료 2.수업료 3.학생 개인의 선택에 따른 납부금 (식대, 통학버스비, 기숙사 등)

제19조(수업료 감면 기준) 학교의 정책 및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의 비용 징수)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중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징수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나 비규칙적이고 예외적인 징수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 7 장 교장 및 기타 교원의 자격과 임무에 관한 사항

제22조(교장 및 기타 교원의 자격) 교장 및 기타 교원은 교육 분야의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23조(교장 및 기타 교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 및 교육과정을 지도·감독한다. 교사는 본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8 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4조(학생 포상)

- ① 총교장(및 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선행을 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② 기타 학생 포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학생 징계)

- ① 총교장(및 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사 관리 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처분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 ③ 징계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 ④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학교 내 폭력사고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학생생활규정

제2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회계규정

제27조(회계규정) 본교의 회계규정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 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 11 장 학칙 개정 절차

제28조(학칙개정) 학칙의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8조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